

2. 都市計劃施設 公園決定(案) 意見聴取

I. 안전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)결정(안) 의견청취

II. 도시계획 결정(안) 조서

I. 도시계획시설(공원)결정(안)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 일	비고
				가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공원	근린공원	종로구 구기동 139-16	-	증)2,127	2,127	-	구기동 139-10 어린이공원 폐지에 따른 대체공원

III. 제안사유

1. 우리 구 관내 구기동 139-16 도시계획시설(공원)결정(안)을 공람공고하고
2.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
자 함.

따로붙임 : 위치도 1부. 끝.

